

2026년 7기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 모집 공고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지정번호 : 산림청 제 2020-04호)

본 숲환경교육센터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입니다.

충북대학교목재종이과학과와 (사)충북생명의숲, 디랜드협동조합과의 MOU협약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목재교육을 보급하고 국산목재 활용과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목재교육전문가를 양성하고자 2026년 제 6기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06월
숲환경교육센터장

교육 개요

- 과정명 : 2026년 제7기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과정
- 교육기간 : 2026. 08. 12.(수) ~ 2026. 11. 30(월) (약 4개월간)
(월, 수 오후 18:30~22:30 온라인(비대면) / 토 오전 09:00~18:00 대면)
※ 교육일정은 교육기관의 운영 상황 및 코로나19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교육대상 : 제한없음.
- 교육장소(강의실 / 실습장 구분)
 - 주소 : 강의실(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8번길 5, 3층)
실습장1.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130(비하동) 디랜드 협동조합)
실습장2. (충북 청주시 상당구 교동로3번길 112. 2층)
 - 연락처 : 043-221-3018 (fax.0504-362-8697)
- 교육인원 : 24명(과정 면제 대상자는 모집인원에 따라 16%(최대 4명) 이내까지 포함)

6. 교육과정 및 자격취득 기준

가. 교육과정

| 과정 | 교과목 | 세부교과목 | 교육시간 | | | |
|----------|---------------|----------------|--------|----|----|----|
| | | | 합계 | 강의 | 실습 | |
| | | | 176 | 92 | 84 | |
| 목재교육개론 | 목재교육입문 | 정책과 제도 | 2 | 2 | | |
| | | 목재와 문화 | 2 | 2 | | |
| | | 산림과 목재 | 2 | 2 | | |
| | 목재교육전문가 일반 | 목재교육 전문가론 | 2 | 2 | | |
| | | 목재교육 경영론 | 3 | 3 | | |
| | 목재과학 | 목재특성 | 14 | 10 | 4 | |
| | | 목재가공 | 8 | 8 | | |
| | | 목재이용 | 6 | 6 | | |
| 계 | | | 39 | 35 | 4 | |
| 목재교육실무 | 제도의 이해 | 제도 기초 | 5 | 3 | 2 | |
| | | 투시도법 | 5 | 2 | 3 | |
| | | 도면의 표시 | 6 | 2 | 4 | |
| | | 재단도면계획 | 2 | 1 | 1 | |
| | 목재가공 실무 | 측정 및 표시공구 | 2 | 1 | 1 | |
| | | 수공구 | 9 | 3 | 6 | |
| | | 전동공구 | 9 | 3 | 6 | |
| | | 목공기계 | 4 | 2 | 2 | |
| | | 마감기법 | 6 | 2 | 4 | |
| | 목재가공 실습 | 목재가공실습 I | 12 | 2 | 10 | |
| | | 목재가공실습 II | 12 | 2 | 10 | |
| | | 종합실습 | 12 | 2 | 10 | |
| | 목재가공 안전 | 작업안전 | 2 | 2 | | |
| | | 실습실 안전 | 2 | 2 | | |
| | 계 | | | 88 | 29 | 59 |
| | 목재교육방법론 | 교육과정 | 목재교육정의 | 2 | 2 | |
| 목재교육과정설계 | | | 4 | 1 | 3 | |
| 교재개발 | | | 4 | 2 | 2 | |
| 교수학습 | | 교육철학 | 2 | 2 | | |
| | | 교수학습모형 | 2 | 2 | | |
| | | 실기교육방법론 | 3 | 3 | | |
| | | 직업 및 진로지도 | 3 | 3 | | |
| | | 교수설계의 이해 | 2 | 2 | | |
| 수업설계 | | 수업매체활용 | 3 | 1 | 2 | |
| | | 수업지도안 작성 | 8 | 1 | 7 | |
| | | 실습장구성 | 1 | 1 | | |
| | | 사례분석 | 2 | 1 | 1 | |
| | | 평가관 | 1 | 1 | | |
| 평가 | | 평가의 절차와 종류 | 2 | 1 | 1 | |
| | | 사례분석 | 2 | 1 | 1 | |
| 계 | | | 41 | 24 | 17 | |
| 안전 | 응급처치교육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 | 8 | 4 | 4 | |

나. 교육방법 : 온라인 이론강의 및 대면 실습강의

다. 자격취득 기준 : 목재교육 전문과정 총 교육시간(176시간)의 **8할 이상**을 출석한 자로(단 일부 교과목을 면제받는 자는 면제받은 교과목을 제외한 교육시간의 8할 이상을 출석한 자로), 목재교육 자격시험을 통과한 자

| 구분 | 평가 방법 | 이수기준 |
|------|-------|---|
| 출석률 | 출결 관리 | 총 교육시간의 8할 이상 출석 ※ 교과목 면제대상자는 면제받은 교과목을 제외한 교육시간의 8할 이상 |
| 자격시험 | 필기 시험 | 과목(목재교육개론, 실무, 방법론)당 100점을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 2026년 하반기 자격시험 예정일 : 2026. 12월 초(토) 예정

7. 교육비 및 면제 기준

가. 교육비 : 2,100,000원(금이백일십만원)

-본 기관 회원(타 자격증 양성과정 수료자) 대상 --> 168만원

-실습작품 나눔 기부 교육생 또는 (사)충북생명의숲 1년이상 기부 회원 --> 178만원

-교육비는 2회에 한하여 분납 가능(1회분_7.31까지, 2회분 9월 20일까지)

나. 교과목 면제에 따른 교육비 면제기준 : 붙임1. 참고하여 신청서에 표기(수강을 희망하는 경우 미표기)

- 면제과목 신청자는 해당 교과목 수강 금지(교재 미배부)

- 면제 기준에 따른 교육비 면제비율은 붙임1. 참조

다 . 환불 규정 : 붙임2. 참고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름.

8. 결격사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6(목재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목재교육전문가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의 죄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결격사유 해당여부는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II

교육 신청서 접수 및 교육비 납부

1. 신청 접수 방법

가. 신청기간 : 2026. 06. 22 (월) 10:00 ~ 2026. 08. 07(금) 18:00

- ※신청기간 내 교육비 선착순 마감. (지원서 제출 및 교육비 입금시 확정)

나. 신청서 제출 방법 :

① 목재정보서비스 홈페이지 이용 접수

- 목재정보서비스 홈페이지 주소 : <https://winz.forest.go.kr/usr/main.do>

② 기관 접수 : 온라인/ 숲환경교육센터 이메일 또는 팩스

원서 작성(숲환경교육센터 <http://cafe.daum.net/feec> 에서 다운로드)

- 이메일 주소 : feec@hanmail.net

- 팩스번호 : 0504-362-8697

③ 제출 서류 : 목재교육전문가 양성과정 신청서 1부,

교과목면제 관련 증빙서류*

접수 확인후 교육비 납부 -> 등록완료(전화 043-221-3018)

다. 납부방법 : 입금계좌 농협 301-0209-0259-51 (예금주 : 숲환경교육센터)

기한 : 모집시작 ~ 7. 31(금) 18:00까지

※ 신청서는 붙임서식으로 작성 제출하며, 면제과목 대상자는 선발 교육생만 증빙서류 제출

※ 면제 관련 증빙 서류 : 학력사항 증빙서류(졸업증명서), 국가/민간 자격증, 경력 확인서 등 _ 붙임2. 참조

III

향후 일정 및 기타 유의사항

1. 향후 일정

가. 선발 교육생 응시자격 등 증빙서류 제출

- 제출대상 : 교과목 면제 신청 대상자

- 제출일시 : 신청기간내

- 제출장소 : 숲환경교육센터 사무국

-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 fax 접수

- 제출서류 : 붙임2. 면제 기준 관련 자격 및 경력 서류

※선발 교육생 자진포기 및 선발 취소시 예비 후보 순으로 교육생 선발

※ 기한 내 수강료를 계좌이체로 납부해야 함. (미납부시 선발 취소 및 대기자 순으로 선발)

※ 카드결제나 할부는 없습니다. 단 현금영수증은 발행합니다.

2.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 등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교육선발이 취소될 수 있음.

- 총 176시간의 교과목별 교육시간의 80%이상 출석하고 평가에서 과목별 40점 이상, 평균 60점이상인 경우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양성과정 세부 일정은 개강일에 공지

※ 개인사정 등으로 미출석하여 교육이수기준 미달에 대한 책임은 교육생 본인에게 있음.

- 문의처: 숲환경교육센터 사무국(☎ 043-221-3018)

붙임2. 목재교육전문가 과정의 면제 기준 (교육비 210만원 기준)

| 면제대상자 | 면제 과목 | 면제 시간 | 감면 비율 | 감면액 (천원) |
|---|-------------------|----------|----------|-------------|
| 1.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라 목재관련 학사학위를 득한 사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50조에 따라 목재관련 전문학사 학위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전공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목재과학 | 28시간 | 16% | 330 |
|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림, 임산가공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목재과학 | 28시간 | 16% | 330 |
|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목공 분야의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목재가공 실무 | 30시간 | 17% | 350 |
| 5. 「자격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목공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목재가공 실무 | 30시간 | 17% | 350 |
| 6.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라 교육관련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 7. 「고등교육법」 제50조에 따라 교육관련 전문학사 학위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에 준하는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전공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교수학습 , 수업설계 | 26시간 | 15% | 310 |
| 8. 직업훈련교사 3급 이상 자격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교수학습 , 수업설계 | 26시간 | 15% | 310 |

비고

1. 목재관련 학과는 임산공학과, 목재종이과학과, 산림과학부(환경재료과학전공) 등 목재관련 교과목이 개설된 학과를 말한다.
2. 목공 관련 국가자격이란 목공예기능사, 가구제작기능사, 가구제작산업기사, 건축목공기능사, 건축목공산업기사, 실내장식기능사, 건축목공 기능장, 문화재수리기술자(소목, 건축)등을 말한다.
3. 다음 표에 따라 세부 교과목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면제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학위 증명서, 교과목 이수확인증, 관련 분야 종사 경력 등)를 제출해야한다.

붙임3. 교육비 환불기준

- 수강료는 아래와 같이 환불하며, 환불금액은 강의용 교재비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함.

[별표 4] <개정 2011.10.25>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

| 구 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장소들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 |
|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 |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환불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환불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